

조세재정 Brief

K I P F I S S U E P A P E R

간이과세제도와 사업자들의 행태변화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dwjung@kipf.re.kr

- 01 들어가는 글
- 02 현황 및 분석
- 0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2022.6.30.

No.125



요약

-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일정 공급대가 기준금액 이하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제도 대상자에게 표준 부가가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임
- 본 연구는 '19년, '20년 부가가치세 개별 미시납세자료 표본을 이용하여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행태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함
- 사업자들은 간이과세 기준금액('21년 개편 이전)인 공급대가 4,800만원 근방에 몰리는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사업체의 특징(업력, 업종, 사업체 소재지 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남
 -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 집중하는 특징은 사업자들의 세 부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준금액 주변에서 납부 세액의 크기가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 또한 세 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의 경우 사업체 분포의 집중현상은 더 뚜렷하게 관찰됨
- 새롭게 개편된 간이과세 기준금액 공급대가 8,000만원 주변에서 관측되는 사업자들의 행태변화 역시 본고의 분석결과처럼 유사하게 관찰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경제적 왜곡이 심화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 효율적인 정책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정다운,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01 들어가는 글

-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일정 공급대가 기준금액 이하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표준 부가가치세율보다 낮은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등을 적용하는 제도임
-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적용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이들의 세 부담을 경감 시키려는 부차적 목적도 포함함
- 본 연구는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되기 이전 시기의 부가가치세 개별 미시납세자료 표본을 이용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 사업자들이 세 부담 경감 등의 혜택을 이유로 행태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연구임
-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제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과세특례 형태를 거쳐 '00년부터 현재와 유사한 형태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21년부터 새롭게 개편되어 운영 중임

02 현황 및 분석

1. 간이과세제도 개괄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제도는 '21년부터 개편됨
 - 간이과세의 기준금액은 20년 만에 상향조정되어 기존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공급대가 8,000만원으로 변경됨
 - 과거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이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를 적용하였으나, 개편된 내용에는 간이사업자들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포함함
 - '21년 개편 이전에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개인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었던 사업자로서, 개편 이후 간이사업자들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이들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 증가는 없음
- 간이사업자들의 매출세액 계산 방법은 일반사업자들의 그것과 다름

- 일반사업자의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율)로 계산되며,
- 간이사업자의 매출세액(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10% (부가가치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됨
- '13년 이후 동일하게 적용된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새로운 분류 기준과 새로운 부가가치율로 개편함 (<표 2> 참조)
 -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전반적으로 인상됨
 - 이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으로 간이사업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함으로써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임

2. 선행연구

-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타당성,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적정 수준 등에 대한 법적 고찰, 정성적 분석 등이 다수를 이룸(심충진·김진태, 2020; 정유석, 2019; 강남례·김원배, 2018)

표 1 과세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 연간 공급대가 기준금액 및 세율

연도	일반소매업 등 (세율: 2%)	대리, 중개, 도급, 위탁매매 (세율: 3.5%)	납부의무 면제금액(납부세액 기준, 과세기간(1기) 기준)
1977	1,200만원	300만원	7,500원
1978	1,200만원	300만원	1만원
1979~1987	2,400만원	600만원	1만원
1988	3,600만원	900만원	1만원
1989	3,600만원	900만원	2만원
1990~1993	3,600만원	900만원	4만원
1994	3,600만원	900만원	6만원
1995	3,600만원	900만원	12만원
1996~1999	4,800만원	1,200만원	24만원
2000	4,8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공급대가 기준)
2000~2018		4,800만원	2,400만원
2019~2020		4,800만원	3,000만원
2021~		8,000만원	4,800만원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12)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변화

구분	소매업	제조업 · 전기 ·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 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 기타 서비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06년~2012년	15%	20%	30%	40%	
구분	전기 ·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소매업 · 음식점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조업 · 농업 · 임업 및 어업 · 숙박업 ·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 기타 서비스업	
2013년~2020년	5%	10%	20%	30%	
구분	소매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음식점업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숙박업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기타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2021년	15%	20%	25%	30%	40%

주: 1.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2003년 제1기부터 기타 서비스업에서 분리되어 20%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기 시작함
 2. 소매업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2011. 12. 31.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15%
 3. 음식점업, 숙박업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2014. 12. 31.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

자료: <http://www.samili.com/tax/BugaRate.asp>, 검색일자: 2021. 1. 18.

- Kou et al.(2020)은 본고의 분석과 유사한 연구로, 중국의 증치세(부가가치세)제도 중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적용하는 우리나라 간이과세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분석한 연구임
 -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7%이며, 간이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3%로 차이가 큼
 - 이 연구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 행태변화가 있을 것을 가정하고 실증 분석함
 - 분석 결과, 제조업과 소매업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부근에서 사업체들이 많이 몰리는 집군(bunching) 현상을 발견함
 - 이는 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점 부근으로 사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해석함

사업자들의 행태변화를 관찰한 선행연구는 저자가 파악하기로는 Kou et al.(2020)이 유일함

- 본고는 국내의 개별 납세자료 표본을 사용하여 이러한 선행연구에 추가적으로 실증결과를 제시한 연구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향후 간이과세제도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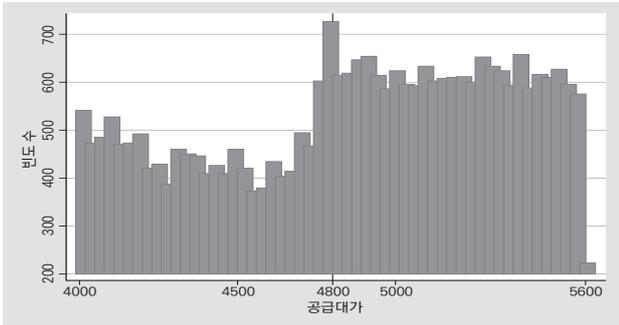
3. 실증 분석 결과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1년 제도 개편 전인 부가가치세 '19년, '20년 귀속 신고자료이며, 공급대가 기준 4,000만원에서 5,600만원 사이의 사업자들의 대표 표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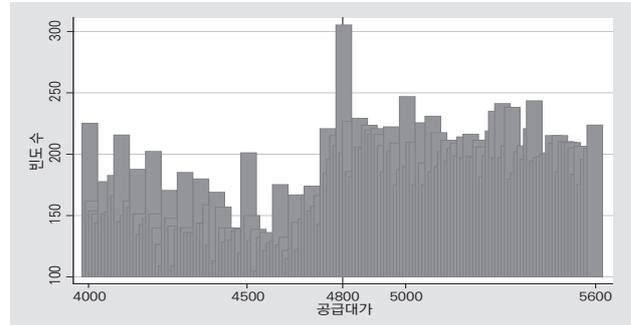
- 간이과세제도에 대해 개별 납세자료를 활용하여

-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토함

그림 1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분포 (2019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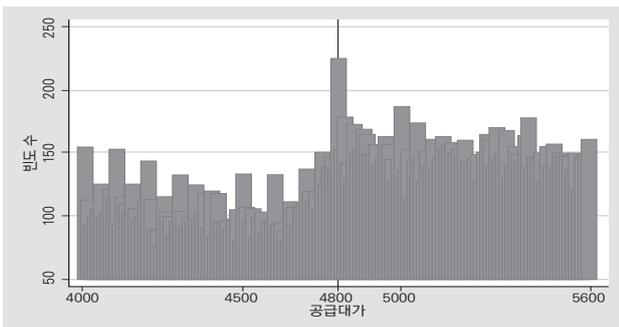
(a) 30만원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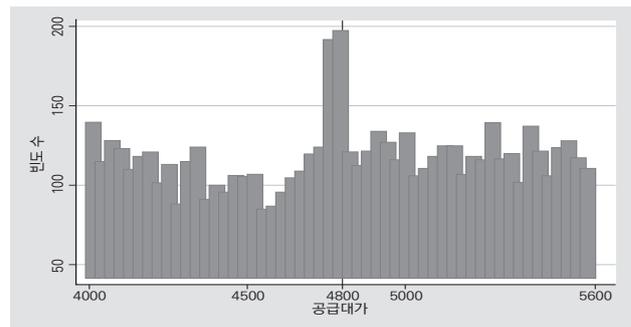
(b) 10만원 구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사업체 특징에 따른 이질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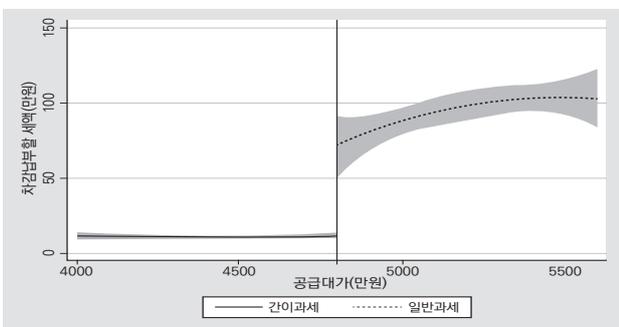
(a) 2010년 1월 이전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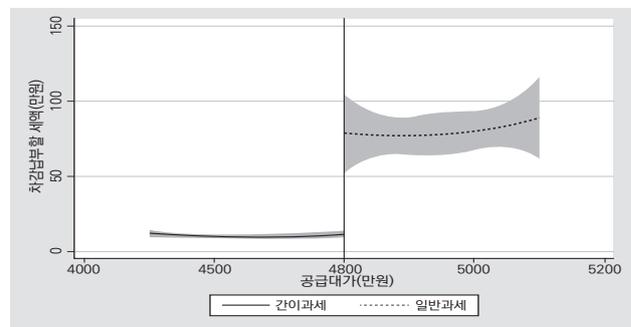
(b) 사업체 소재지가 서울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 일반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납부세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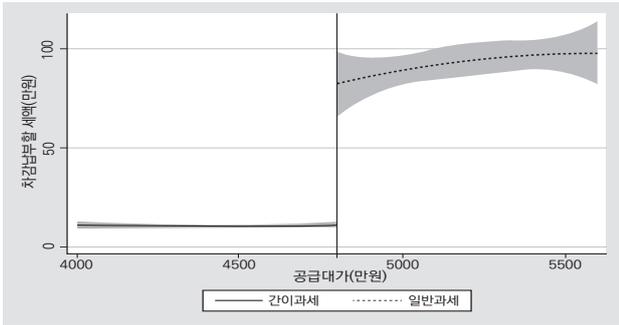
(a) 4,000만원~5,600만원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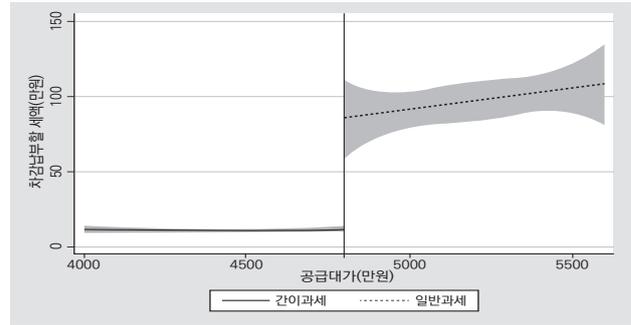
(b) 4,500만원~5,100만원 표본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 사업체 특징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a) 2010년 1월 이전 개업



(b) 사업체 소재지가 서울

자료: 저자 작성

- 사업자들은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 매출을 조정하거나 매입을 조정하는 형태로 간이과세 적용에 따른 유인기제에 반응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준금액 주변에서의 사업체 분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사업자들의 행태변화를 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간이과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크기와 관련있을 수 있음
 - 왜냐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인한 세 부담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임
- 분석결과 4,800만원 근방에서 사업자가 집군(bunching)하는 현상이 관찰됨([그림 1] 참조)
 - 첫 번째 가설인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의 이질적 분포현상을 관찰함
 - 4,800만원 근방에서 집군현상이 유독 뚜렷하게 발견되는 현상의 잠재적인 설명은 사업자들이 인위적인 자기선택(self-selection) 행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임
 -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 개업일별로도 집군현상이 이질적으로 관찰됨
 - 사업체 업력이 오래될수록, 사업체가 서울에 위치할수록 집군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됨
- 앞서 분석한 집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 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비교함
 - 4,800만원 근방에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 납부세액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그림 3]에서 표본구간 선택에 관계없이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사이에서는 세 부담의 크기 차이가 존재함
- 이러한 세 부담의 차이는 [그림 1]의 집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임
- 동일한 방법으로 [그림 2]의 집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업체 업력과 소재지별로 세 부담의 이질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함
 - [그림 3]과 같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됨
 - 이러한 경제적 유인기제가 [그림 2]의 집군현상을 일부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사업체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소재지가 서울 등 대도시일 때 이러한 현상이 더 뚜렷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특성을 보유한 사업자들에게는 세무회계 서비스에 대한 접근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본고의 지면상 다른 분석결과들을 생략하였으나, 사업체 분포의 집군현상이 관찰되는 경우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간의 세 부담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반대로 사업체 분포의 집군현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세 부담 차이도 나타나지 않음

- 또한 세 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서도 집군현상의 이질성이 관찰되었는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낮을수록, 즉 세 부담이 더 적어질수록 분포의 집군현상이 더 뚜렷하게 관찰됨

0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는 간이과세제도로 인한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를 연구함
 - '21년 간이과세제도 개편 이전의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서, 개편 내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음
- 사업자들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공급대가 4,800만원 근방에 몰리는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사업체의 특징(업력, 업종, 사업체 소재지 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남
 -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 집군하는 특징은 사업자들의 세 부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준금액 주변에서 납부세액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 사업체 특징에 따라 분석해보면, 사업체 분포의 집군 현상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 크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며, 집군현상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크기에 큰 차이가 없음
 - 또한 세 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의 경우 사업체 분포의 집군 현상은 더 뚜렷하게 관찰됨
-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개인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목적을 지닌 부가가치세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지나친 확대 적용은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이 주된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세 부담 경감의 목적도 포함함
 -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세 부담 경감 유인에 반응하고자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함
 - 최근의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개편은 특수한 상황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등의 보완책 마련은 간이과세제도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1년부터 적용 중인 공급대가 8,000만원 기준금액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업자들의 행태변화 역시 본고의 분석 결과에서처럼 유사하게 관찰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경제적 왜곡이 심화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 효율적인 정책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강남례·김원배,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연구」,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제3권 제4호, 2018, pp. 25~43.

심충진·김진태,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7권 제1호, 2020, pp. 37~61.

정유석, 「주요 세목별 조세지원제도의 운영과 합리적인 세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86, 2019, pp. 75~9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제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E. Kou, Y. Sun, and L. Yue. “The response of small firms to VAT thresholds: Evidence from China,” Applied Economics Letters, 2020.